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금융은 **튼튼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| 2025.10.1.(수) 조간 | 배포 | 2025.9.30.(화) | |
| 담당부서 |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| 책임자 | 팀장 | 박항신 (02-3145-8880) |
| | | 담당자 | 선임 | 양길남 (02-3145-8735) |

교통사고 환자 유치를 통한 병·의원의 자동차 보험사기! 브로커의 은밀한 제안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

■ 소비자경보 2025-23호

| | |
|----|-----------------|
| 등급 | 주의 경고 위험 |
| 대상 | 금융소비자 일반 |

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- 최근 병·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, 통원 치료로 충분한데도 병·의원에서 허위로 입원처리하는 등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증가*하고 있습니다.
 - * '25년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 ('24.상반기 약 17억원 → '25.상반기 약 140억원)
 - 일부 병·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,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·과장청구 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병·의원의 보험금 허위·과장청구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,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(주의)를 발령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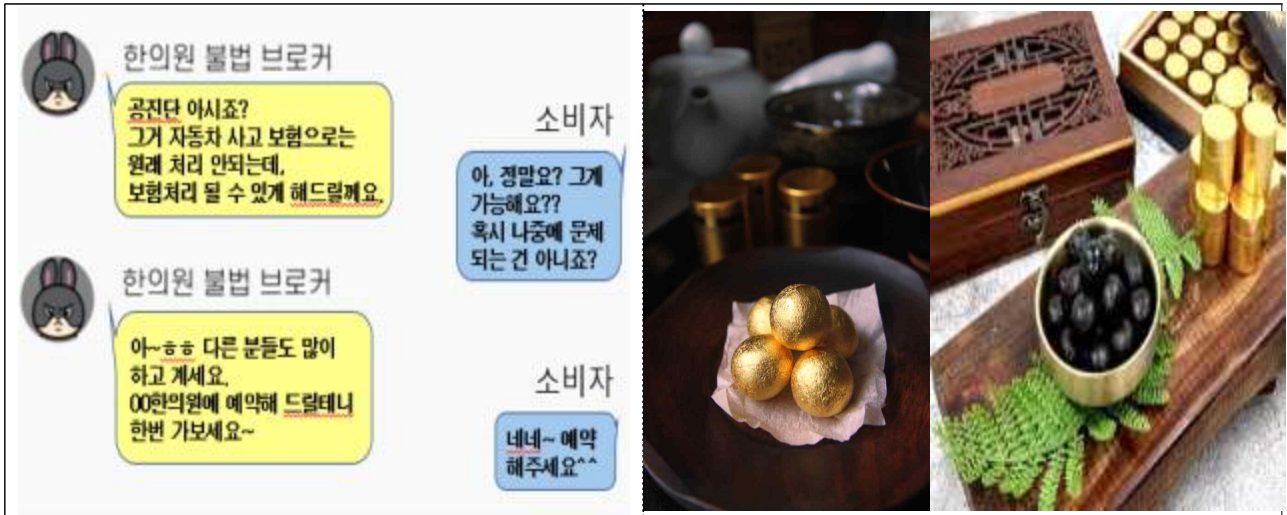
소비자 유의 사항

- 1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**보험사기 브로커**의 제안은 **단호히 거절**하셔야 합니다.
- 2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, 사전에 조제된 처방약을 받으시면 **보험사기에 연루**될 수 있습니다.
- 3 입원환자는 무단으로 외출·외박하여 배달·택시 영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**보험사기로 고발**될 수 있습니다.

1. 허위입원 등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

-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C 한방병원에 허위입원을 권유하였습니다.
 - B씨는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필요성이 낮았음에도 A씨는 의사와 직접 진료 없이도 통화만으로 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을 해야만 **대인합의금***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였습니다.
 - *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손해에 대하여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, 향후 치료비 및 휴업손해를 포함하여 지급
 - 아울러, 입원시 **공진단·경옥고** 또는 **미리 조제한 첩약**을 제공 받을 수 있어 **신체보양**을 할 수 있다고 권유하였습니다.

[참고1] 공진단 보험사기 사례(대화내용, 공진단, 경옥고)



- 경미사고 환자 B씨는 14일 입원 중에 외출·외박하여 배달업무를 지속하였습니다.
 - C 한방병원은 입원 필요성이 없는 B씨를 허위입원시키고 외출·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**조작***하였습니다.
 - * 환자정보를 미리 받아놓고 진료도 없이 불필요한 입원서류를 만들거나, 영업을 목적으로 외출하였음에도 간호사가 외출기록부에 임의로 외출 사유·시간 등 기재

III. 소비자 유의사항

①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.

□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·의원 브로커의 알선·유인 행위에 동조하여 허위입원*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* 통원환자가 합의금 목적으로 억지로 입원하거나, 입원중 배달 등 영업행위 수행

○ 병원과 공모한 브로커가 “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” 또는 “공진단·경옥고 등을 처방받을 수 있다”라고 유혹하는 경우, 단호하게 상담을 중단하고 거부하셔야 합니다.

②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한방 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, 사전에 조제된 처방을 받으시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.

□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, 개별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·제조된 처방을 받으시면 안됩니다.

○ 보험사기 혐의 한방 병·의원은 주말·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처리해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, 이에 동의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.

[참고5] 교통사고 환자 불법 처방제공 사례



㉓ 입원환자는 무단으로 외출·외박하여 배달·택시 영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고발 될 수 있습니다.

- 교통사고 후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권유하며, 외출·외박이 자유롭다는 병·의원 직원과 상담은 즉시 중단하세요.
- 이런 병·의원은 환자를 유치하고자 추가 부담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거나, 자유로운 외박·외출을 허용하며 장기치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아울러, 무단으로 외출·외박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III. 당부사항

- 최근, 자동차 사고 발생시 일부 한방 병·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허위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
-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입원 유도, 치료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,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‘병원이 시키는대로 했으니 괜찮겠지’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.

[보험사기(알선·유인·권유·광고행위 포함) 신고 방법]

- ▶ (유선 상담·신고) ☎1332 - 4번(금융범죄) - 4번(보험사기)
- ▶ (인터넷 접수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상단 『민원·신고』 → 『불법금융신고센터-보험사기신고』
- ▶ (우편 접수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
- ※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도 운영
(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s://www.fss.or.kr>)